

제2734호
2020. 5. 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 | |
|---|------|
| 선 | 기관의장 |
| 람 |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35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2020-358호 :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공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5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 누구나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구민건강증진사업(안 제4조~제6조)
 - 사업계획의 수립 : 기본목표, 추진과제, 주민참여활성화 대책 등
 - 구민건강증진사업 개요
 -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 주민참여형 주민건강조직 운영
 -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마일리지 운영
- 구민건강증진위원회(안 제7조~제10조) :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 의견수렴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3조)
- 시행규칙(안 제 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보건위생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무학동), 문의전화 : 3396-6319, FAX: 3396-8880, 메일 : aurora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에 따라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이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마일리지”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 건강생활 실천과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등의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 건강 실태조사 및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구민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건강증진사업) ① 구민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 2. 주민참여형 주민건강조직 운영
- 3.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마일리지 운영
- 4.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건강마일리지) ①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중구 건강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 1. 걷기 앱에서 목표걸음 수 달성
- 2.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 건강증진사업 참여
- 3.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지도자, 건강소모임 활동 참여
-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여

- ③ 가입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하되, 중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에 대해서는 타시도 거주자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참여자의 누적된 마일리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지급하거나, 우리 구 건강취약계층 돌봄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구민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위원장
 2. 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 건강모임 대표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5. 구민건강증진 사업 소관부서장
 6. 그 밖에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정책의 수립 시행 시에는 구민과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구민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제정 조례 제 호 20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공 고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58호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 부의안건 : 예산안 1건, 조례안 6건

| 구분 | 부 의 안 건 명 | 주관부서 (연락처) |
|-----|---|------------------------|
| 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과 (3396-4911) |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생활안전담당관 (3396-4474) |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 | 동정부과 (3396-4576) |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 사회복지과 (3396-5391) |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치수과 (3396-6161) |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행정관리국 (3396-5565) |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차관리과 (3396-6251) |